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784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# 1. 제안이유

기후동행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(유효한 카드 소지자)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 감액(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)
- 나.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경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(안 부칙 제2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#### 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 
해당없음

#### 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4. 3. 8. ~ 3. 2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최지현 (☎ 02-2133-5242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6조제2항 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,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(생 략)</p> | <p>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|

#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하여 제6조(관람료 감면) 제2항의 관람료 감면대상에 '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'를 추가하고자 함
- 이에 유효한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일로 부터 3년까지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입감소가 발생함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감면기간 : 2024년 5월 22일(조례 공포·시행예정일)부터 3년까지
- 감면금액 : 인당 750원 ※ 관람료 평균 1,500원의 50% 적용

| 구 분       | 금 액    |            | 비 고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| 개인     | 단체(20명 이상) |         |
| 어 른       | 2,000원 | 1,000원     | 20세~64세 |
| 청소년 및 어린이 | 1,000원 | 500원       | 7세~19세  |

- 감면비율 : 0.83%  
- 0.83% = 24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관람료 예상감면인원(13,572명) /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수(1,628,332명) × 100
- 감면인원 : 연 8,300명  
- 8,300명 = 기후동행카드 소지자 50만명 × 0.83% × 과학관 2개소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      | 1차년도  | 2차년도  | 3차년도  | 4차년도  | 합계 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|
| 수입      | 감면입장료 | 4,150 | 6,225 | 6,225 | 2,594 | 19,194 |
|         | 소계(b) | 4,150 | 6,225 | 6,225 | 2,594 | 19,194 |

(앞쪽)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없음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|      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합계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구분 | 국비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|
|    | 지방세수입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|
| 시비 | 세외수입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|
|    | 지방채 등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|
|    | 민간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|
|    | 기타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|
|    | 합계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|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최지현(02-2133-524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차년도 : 4,150천원 = 8,300명 × 8개월/12개월 × 750원
- 2차년도 : 6,225천원 = 8,300명 × 750원
- 3차년도 : 6,225천원 = 8,300명 × 750원
- 4차년도 : 2,594천원 = 8,300명 × 5개월/12개월 × 750원

※ 조례 시행시기 고려하여 1차연도는 8개월치, 4차연도는 5개월치 산정